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 22) 상정
-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 2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세정과장: 최 인 용)

가. 제안이유

○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을 종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완화하여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함.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한센정착농원이 관내에 없으므로 한센환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

고,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측면에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4조)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13조)

○ 7~10인승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후 산출세액이 종 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 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으로 부과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안 제15조의2)

-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 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 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주택에 대 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5조)

- 시세 감면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결정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함. (안 제27조 및 서식)
-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 장함. (안 부칙)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 개정시 감면되는 금액은?	○ 관련 조별로 감면이 이루어 질 것 이며, 건수로는 약 2,7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
의 결 년월일	2007. 1. 23

제안년월일: 2007년 1월 9 일

제 안 자: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 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 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을 종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 차로 완화하여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함. (안 제2조제2항 및 제3 조제1항)
- 나. 한센정착농원이 관내에 없으므로 한센환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측면에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4조)
- 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13조)
- 라. 7~10인승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안 제15조의2)

- 마.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 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5조)
- 사. 시세 감면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결정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함.(안 제 27조 및 서식)
- 아.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함. (안 부칙)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를 "중상이자 및"으로, "면제한다." 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14등급"을 "14급"으로, "사용하는"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 나목중 "고급자동차"를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등록말소"를 "말소등록"으로 하고, 동항 나목중 "고급자동차"를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며, 동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자동차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이"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 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 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의 경우와 「철도법」제76조"를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3조제2호중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신청인에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한다.

조례 제1814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및 조례 제18 19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조례 제1998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일 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및 조례 제2154호 부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म न्हों हो है। इस न्हों हो				처리기간	
	부천시 시세 감면 신청서 ^{7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역	인등기번호)		
주 소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1	면 세 액
감면내용					
在已910					
감면사유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 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ارم ارم			
	년	월 일			
			위 신청인	<u>٥</u>] ()	너명)
부천 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41/11/11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부 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 초 결정세액	⑥감 면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제1조(목적)
법」 <u>제7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시	<u>제7조 및 제9조</u>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	
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	대한 감면) ①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u>중상이자 및</u>
<u>그 유족과</u> 그 중상이자로 구성	
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u>면제한다.</u>	면제하고, 국가유공
	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
	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
	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②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혂 했 개 정 아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 --- 14급 -----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 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 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 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 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 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 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 각 호<u>의 어느 하나</u>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개 정 아 혅 행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 나. -----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 차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 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 감면) ①----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 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다. (현행과 같음)

다. (생략)

현 행
2. ~ 4.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동차는</u>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u>시장·</u>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업소</u>에 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 동차

4. (생략)

개 정 안
2. ~ 4. (현행과 같음)
2
<u>경우에는</u>
1. (현행과 같음)
2
۷.
<u>시장이</u>
3
<u>자동차폐차영업소</u>
4. (현행과 같음)
제4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u>감면)</u>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

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

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

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

현 행	개 정 안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
	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감면) ①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	
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	
면이 고시된 <u>토지의 경우와</u>	토지와 「철도안전법」
<u>「철도법」제76조</u> 의 규정에 의하	<u>제45조</u>
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	
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u>제18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한 특별법」제37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	
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	
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혅 행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 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 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 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세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u> </u>
출자 또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	
<u>라 한다)</u>	
	-
	-
	_
민간출자분 또는 민기	간
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
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	- —
<u>.</u>	
데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약	위
한 감면)	- —
	_
	_
	_

ᆀ

저

아

개 정 안 혀 행 추징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 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 제1항 -----, 동조 제1항제2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 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제25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 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 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 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

혅 행 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 정 안

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 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 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 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 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 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7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제27조(감면신청 등) ①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	
는 자는 <u>별지서식</u> 에 의한 부천	별지 제1호서식
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	
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u>신청</u>	별지 제2호서식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하여 신청인에게